

『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0년 1월 21일

나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0년 1월 22일

라. 상정일자 : 2020년 2월 3일

제23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선산출장소장 유 익 수

나. 제안이유

- 새로운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볼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개정 (안 제3조)
-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사항 추가(안 제3조의2)
- 위원회 심의 사항 추가(안 제4조제5호)
- 위원의 해촉 사유 추가 (안 제7조)
- 변경된 공동상표 심볼 반영 (안 별표1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상표법」 제107조 및 제109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전 천 수

- 본 「구미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,
 - 새로운 우수 농특산물 공동상표인 '일선정품'의 심볼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서,
 - 상표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농특산물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